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126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조인명, 예자선, 엄진용, 구진주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2. 3. 30. 접수 제4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2. 5. 27. 접수 제6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정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삼척시		임야 1855 m ²
2. 강원도 삼척시		임야 238 m ²
3. 강원도 삼척시		임야 53356 m ²
4. 강원도 삼척시		임야 3967 m ²
5. 강원도 삼척시		임야 1983 m ²
6. 강원도 삼척시		임야 14678 m ²
7. 강원도 삼척시		전 2036 m ² .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종합보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C(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과 이 사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2.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과 보험사고의 발생

소외 주식회사 E(이하 '피보험자 회사'라 합니다)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과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2. 3. 8. 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회사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및 갑 제2호증 보증보험 약정서 참조).

이후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7. 13. 피보험자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입금확인증 참조).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계약자와 채무자에게 24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2022. 10. 6. 수원지방법원 2022차1231 사건으로 위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

령을 신청하여 2022. 10. 14. 확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인정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채무자는 원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증보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업 현황, 실적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던 바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채무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2022. 6. 11.) 직전인 2022. 3. 24.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시켰고, 위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자에게 채권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나.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

1) 채무자와 피고 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채무자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2022. 6. 11)하기 직전인 2022. 3. 2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그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2. 3. 30. 접수 제4206호 및 같은 등기소 2022. 5. 27. 접수 제67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갑 제 4-1 내지 4-7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채무자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무자력 여부는 추후증거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7. 5. 9. 96다2606 판결 등),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라. 소결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원상회복청구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2. 3. 30. 접수 제4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 5. 27. 접수 제6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